

MG 재형저축 특약

제 정 2013. 3. 4

일부개정 2015. 4. 1

제1조(적용범위) MG재형저축(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 새마을금고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계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예금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납입한도) ① 이 예금은 분기별 300만원(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새마을금고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우대

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예금가입 가능한도를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상품유형) ①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1. MG재형저축(A형)
2. MG재형저축(B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이자계산) 이 예금의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예금지급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단리로 적용합니다.

제7조(이율적용) ① 이 예금의 약정이율은 제5조의 상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MG재형저축(A형)”은 계약일에 금고가 고시한 기본이율을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매 1년(이하 “회전주기”라 한다)마다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이하“회전주기 개시일”이라 한다)에 금고가 고시한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2. “MG재형저축(B형)”은 계약일에 금고가 고시한 기본이율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회전주기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금고가 고시한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은 제5조의 상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MG재형저축(A형)

가. 계약일로부터 3년 이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계약일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 및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

본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료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2. MG재형저축(B형)

가.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나. 종료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이 예금의 만기후이율은 제5조의 상품유형에 따라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한 만기후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특별해지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2. 제10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이 예금의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이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계약일로부터 제1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예금 해지일의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예금 해지일에 금고가 고시한 “온라인보통예탁금”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세율적용)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령, 소득세법령, 지방세법령, 농어촌특별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특별해지)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특별

해지사유신고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감면은 제8조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
는 파산선고

제10조(가입자격의 검증) ① 이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 제
출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
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등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2015. 4. 1>

② 고객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국세청이 새마을금고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
은 날에 이 예금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납입이 중단됩니다.
<개정 2015. 4. 1>

③ 새마을금고는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개정 2015. 4. 1>

④ 제3항의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새마을금고가 국세청으
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고객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마을금고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객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그 수용 사실을 새마을금고에 통보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납입 중단을 해제합니다.<개정 2015. 4. 1>

제11조(제한사항) ① 이 예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예금은 일부해지할 수 없습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2013. 3. 4>

이 특약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특약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적용한다.